

2016년도 문화재위원회

**제1차 문화재위원회(천연기념물-세계유산)
합동분과 소위원회 회의자료**

- ▣ 회의일시 : 2016. 4. 15.(금), 14:00~15:30
- ▣ 장 소 : 정부대전청사 소회의실(1동 207호)
- ▣ 출석위원 : 김학범, 이상해, 전영우, 우경식
- ▣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목 차

【심 의 사 항】

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 | 「한라산천연보호구역」 주변 제주 국립묘지 조성 | 1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
1. 「한라산천연보호구역」 주변 제주 국립묘지 조성

가. 제안사항

「한라산천연보호구역」 주변 제주 국립묘지 조성 및 이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한라산천연보호구역」 주변 제주 국립묘지 조성과 이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해 신청하는 사항임
- 2014년 제1차 천연기념물-세계유산 합동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14.11.4) 시 '현 사업계획으로는 세계자연유산(한라산천연보호구역)의 완충구역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' 사유로 부결됨
- 2015년 제1차 천연기념물-세계유산 합동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15.11.25) 시 '경관, 식생, 지질,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으로 소위원회 구성·심의' 사유로 보류됨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○○○
- (2) 대상문화재명 : 천연기념물 제182호 한라산 천연보호구역
 - 소재지 : 제주특별자치도 일원
 - 지정일 : 1966.10.12.
- (3) 신청내용 <제주 국립묘지 조성>
 - 사업위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산 19-2, 3, 17-1번지 일원
 - 사업내용

| 구분 | 1차 신청('14.11.4/부결) | 금회 신청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
| 지반조사 | 시추조사 15공(76mm), 다운홀테스트 1회, 지하수위 측정 15공(공당 3회), 현장투수시험, 현장밀도시험 | 좌동 | |
| 국립묘지 현충관 신축 및 묘역 조성 | 대상면적 334,407㎡ 건축면적 4,843㎡ 안장기수 약 8,000기 주차 300대 | 대상면적 274,033㎡ 건축면적 4,141.2㎡ 안장기수 약 7,500기, 주차 250대 | 감)60,374㎡ 감)338㎡ 감)500기 감) 50대 |

- ※ 기존 제주도 충혼묘지 현황 : 16,932㎡, 1,500기, 1979년 조성
- (4) 문화재와의 거리 :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,450m 이격(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)
- ※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으로 기존 건축물 개보수 허용

라. 검토의견

- 동 사업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(1.45km 이격)과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기존 충혼묘지를 국립묘지로 확대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
- 안장기수 및 사업면적 등을 축소하여 재신청하였으나, 국립묘지 조성에 따른 문화재 주변 식생 및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마. 참고자료

(1) 현지조사 의견('15.10.1 / 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< ○○○ 문화재위원 >

- 대체부지 선정을 통한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라산의 보존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, 대체부지 선정에 사업주체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
- 신청 사업(안)에 대한 판단은 대체부지 선정 결과를 확인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

< ○○○ 문화재위원 >

-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치, 즉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자료가 보완되어야 함
- 자연환경을 최소 훼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
- 국외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자료가 충분하게 보완되어야 함

< ○○○ 문화재위원 >

- 제주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부지면적이 1차에 비해 약 6ha 감소하고, 안장기수도 축소(8천기→7천5백기)된 것은 긍정적인 진전임
-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스웨덴의 묘지 및 묘제를 참고하여 새로운 안장방법(산골 등)에 대한 고려도 역시 긍정적이라 평가함
- 현상변경 허용기준 지역의 자연림과 인공림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적 가치가 크지 않을지라도 자연림의 약 1/3, 인공림의 3/5를 훼손해야 하는 부지 조성방법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양해야 함
- 대면적이 필요한 재래의 안장법(1기당 평묘의 면적39.7/㎡)을 보완할 수 있는 안장법을 채택할 경우, 국립묘지 조성 면적을 더 축소할 수 있으리라 판단함

(2) 현지조사 의견('14.8.4/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)

- 국립묘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 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(세계자연유산의 완충구역)으로, 사업 시행 시 한라산 구역과 연결된 기존 자연·인공 식생의 1/3이 훼손되므로 경관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 세계자연유산의 완충구역에 위치하여 동 사업 시행 전 세계자연유산 위원회의 보고·심의하여야 할 사안임
- 현재 계획안으로는 자연유산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대체지역을 선정·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
(3) 현지조사 의견('14.6.12 / 문화재위원 ○○○, 前 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 제주대학교 교수)

< ○○○ 문화재위원 >

- 천연 산림지역 내에 대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형·지질·경관 전문가 및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
- 천연 산림지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, 인공 건조물의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
- 세계유산 등재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특별한 검토 요망

< ○○○ 前 문화재위원 >

- 본 건은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의 한라산 정상부를 둘러싸는 완충지역에 포함되므로 이와 같은 광범위 지역의 자연 생태계 훼손은 세계자연유산 위원회(IUCN)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본 건이 국가차원의 공공 시설물을 위한 것이므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심층 검토해야 할 것임
- 본 건의 심층 검토를 위해서는 별도의 관계 전문가들(자연생태계, 지질, 경관, 세계유산 등)에 의한 면밀한 조사·연구 검토가 선행된 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< ○○○ 제주대학교 교수 >

- 사업구역 내의 식생을 정밀조사하여 자연식생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자연식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
- 건축면적을 가능하면 축소할 필요가 있고, 자연환경과 어울리도록 하여야 할 것임
- 세계자연유산의 훼손의 문제가 대두할 가능성이 있는 바, 관련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

(4) 그간 추진경과

- 현상변경 허가 신청('14.5.7/국가보훈처→문화재청)
- 관계전문가 1차 현지조사(○○○위원, ○○○ 前 위원, ○○○전문위원/'14.6.12)
 - 세계유산분야 전문가 추가 조사와 자연식생 훼손 최소화 방안 필요
- 천연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('14.6.25/보류 : 현지조사 후 재검토)
- 천연기념물분과+세계유산분과 합동 2차 현지조사(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/'14.8.4) : 대체지역 선정·조성하는 것이 바람직
- 2014년 제1차 합동분과(천기+세계유산) 문화재위원회 심의('14.11.4/부결)
 - 현 사업계획으로는 세계자연유산(한라산천연보호구역)의 완충구역 보존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
- 현상변경 허가 재신청('15.9.8/국가보훈처→문화재청)
- 관계전문가 현지조사(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/'15.10.1)
 - 대체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검토자료 보완 후 검토 필요
- 대체부지 추가 자료 보완 요청 및 자료 제출(문화재청↔국가보훈처)
- 2015년 제1차 합동분과(천기+세계유산) 문화재위원회 심의('15.11.25/보류)
 - 경관, 식생, 지질 등 관계전문가를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·심의

바. 의결사항

- 보류
 - 제주 국립묘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·공유지를 포함한 대체부지 38개소를 검토한 결과, 법률적·지리적·환경적 요건 등으로 부적합한 대상지를 제외하고 조성 가능성이 높은 예정지 5~6개소를 선정하여 심도있는 논의 필요